

# [2020-8] ○○○, △△△ 이의신청 심의결과 ('20.8.13. 결정)

## ■ 사실 관계

- 신청인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[취소일:○○○(0000.0.00), △△△(0000.0.00)]
- 2000.00.00. 신청인 ○○○은 장애인인 △△△(신청인의 父)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음
- 2020.00.00. 신청외 ◆◆◆(신청인의 동생)에게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
- 2020.00.00. 취득세 부과고지(처분청 : □□군수, 과세표준 00,000천원, 부과금액 : 000천원)
- 2020.00.00.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
- 2020.00.00. 경상북도 선정대리인(●●●) 이의신청 제기

## ■ 쟁점 사항

- 이 건 자동차 취득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것에 대한 추징 제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 매도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을 안내 받지 못한 것이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 ■ 신청인 및 선정대리인 주장

- 신청인 주장 : 신청인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보철용 · 생업활동용 차량으로 감면신청하여 등록한 후, 관할 면사무소에 장애인 차량 등록신청을 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청인의 동생인 신청외 ◆◆◆에게 차량을 이전하였으며, 장애인 차량으로 매입한 차량을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감면 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된다는 것을 차량 매도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면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.
- 선정대리인 주장 :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상태여서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.

## ■ 우리도 의견 : 기각

-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0.00.00. 신청인의 동생인 신청외 ◆◆◆에게 이전한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,
- 신청인의 운전면허가 취소 된 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(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 취소 등)에 해당하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,
- 신청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의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(조심 2019지2265, 2019.10.24.결정 같은 뜻임) 등에 비추어 신청인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신고 ·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.